

지붕작업 안전수칙

! 추락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이 개정되었습니다. <2021.11.19.시행>



지붕작업 주요 재해사례

— 떨어짐

- 1 개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미끄러져 4.5m 아래로 떨어짐
- 2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채광창이 파손되어 7.8m 아래로 떨어짐
- 3 태양광 설비 설치현장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5.0m 아래로 떨어짐
- 4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짐



지붕작업 시 안전수칙

- 1 지붕의 형태,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, 슬레이트,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
- 2 취약한 지붕재, 채광창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
-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 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

▶ 채광창 안전덮개



▶ 지붕작업 안전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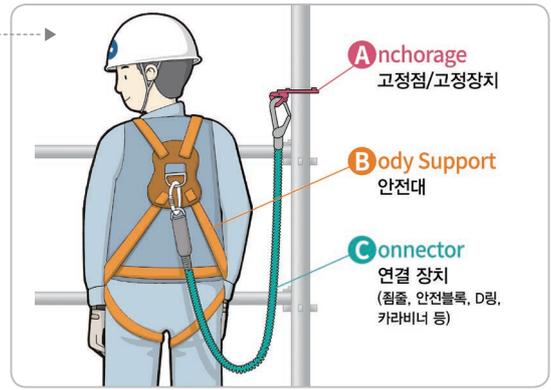


조치순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

→ (곤란한 경우) 추락방호망 설치(제42조제2항)

→ (곤란한 경우)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

- ④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,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
- ⑤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 적재 또는 과적 금지
- ⑥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
- ⑦ 지붕 해체작업 전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·이행·교육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



관련 조항	개정 전	개정 후
제45조 (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)	<p>사업주는 슬레이트, 선라이트(sunlight)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. 채광창(skylight)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.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<p>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p>
	<p><신 설></p>	

